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 2. 12.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년 2월 4일

나. 제 출 자 : 오현숙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 2014년 2월 4일

라. 상정일자 : 제18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2014년 2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오현숙 의원)

가. 제안이유

❍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

나. 주요내용

❍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구청장, 보호자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

❍ 어린이 안전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정비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정보교류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기관, 언론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 ·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태선)

❍ 본 조례안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보호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어린이 안전의 수준향상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정보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전체 사고의 34% 가량이며, 2009~2011년 사이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47,16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중 가정이나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사례는 69.5%인 32,784건으로 나타남.

-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도 201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4.2명(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2)으로 독일, 영국, 스웨덴 등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우리나라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률(인구 10만명당) 〉

연도	'05년	'07년	'09년	'11년
사망자	8.2명	6.2명	5.4명	**4.2명**

* OECD 주요국가(' 05년 기준) : 독일 3.7명, 영국 3.3명, 스웨덴 2.7명

❍ 이러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 6월에는 안전행정부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을 발표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이 어린이를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오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277호

발의연월일 : 2014. 2. .
발 의 자 : 오현숙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호자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다. 어린이 안전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정비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정보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아. 교육기관, 언론기관 등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안 제11조)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2조, 제4조

「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가정복지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합의

라. 기　　타 : 1) 입법예고(‘14. 1. 28 ~ 2. 3) 결과 의견 없음

2) 타구제정 : 중구, 구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양육 및 교육하거나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교통·화재·수난·약취·유인·성폭력·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 등이 수행하는 어린이 안전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 및 구민의 책무)

① 보호자는 무관심·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 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 안전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3. 어린이 안전증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어린이를 포함한 구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전문기관, 경찰서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보조 등)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 · 교육 · 홍보
2.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
3. 어린이 안전 위해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 · 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안전 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 · 보급 및 교육 ·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